

2022-10호

의 정 정 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목 차**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 통영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
-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성평등 교육에 관한 의정토론회
- 충청남도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부산광역시의회, 사랑 에너지 연탄나눔행사 개최
- 인천광역시의회, 베트남 호치민시의회 대표단 방문
- 광주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개원식 개최
- 경기도의회, ‘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 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최근 제·개정 법령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관련질의
- 「지방자치법」 관련질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질의
-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관련질의

최근 타 사·도 제·개정 조례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14.] [강원도조례 제4946호, 2022. 10. 14., 제정]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강원도 내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말한다.

2. “항공화물운송사업”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여객 운송은 제외한다.

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

3. “항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항을 발착지로 하는 정기·부정기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말

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4. “화주”란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국제물류주선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항공화물운송사

업에 대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항공화물 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려금
2.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항공화물유치장려금
3. 그 밖에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지원기간 등은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사업자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항공화물운송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그 계획에는 항공화물운송 계획 또는 화물유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화물량 증감으로 사업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사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와 항공화물 운송 실적 또는 화물유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예산 분담) ① 도지사와 공항 소재 시장·군수는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업체 및 화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에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 업체 및 화주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사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874호, 2022. 10. 12., 제정]

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등) ① 원로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로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원로회의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원로회의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로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로회의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원로회의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시민원로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민원로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원로회의는 안전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원로회의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로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로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광주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12.] [광주광역시조례 제5972호, 2022. 10. 12., 제정]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쓰레기 없는 광주광역시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쓰

담걷기의 날로 운영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

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및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해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18.]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474호, 2022. 10. 18., 제정]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공동주택을 선정·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제3조(평가분야 및 항목)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일반관리 분야

- 가. 관리비 등의 회계관리 투명성
- 나. 외부회계 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의 적정성
-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여부
- 라.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

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 분야

- 가. 공동주택 안전(정기)점검 실시여부
- 나. 입주민 대상 재난·안전 교육 실시여부 및 참여비율
- 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실시 및 조치 여부
- 라. 그 밖의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공동체 활성화 분야

- 가. 주민 화합을 위해 성별, 연령, 장애 등 주민다양성을 반영한 행사 개최 횟수
- 나. 여가생활을 위하여 성별, 연령, 장애 등을 반영한 편익증진 시설 운영 현황
- 다. 관리종사자 인권증진 및 권리 확보 등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 여부
- 라. 그 밖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화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4.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모범 분야
가.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보장 여부
(계약기간 보장 등)
나. 관리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
다. 관리종사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분리된 휴게공간 확보 여부
라. 관리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마. 관리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권
리교육 이수 여부
바. 그 밖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신청 및 평가대상기간) ① 모
범공동주택에 선정되고자 하는 공동
주택은 별지 1의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모범사례를 작성하
고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평가분야별 평가대
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 말일
까지 1년으로 하며 제출기한은 평가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
월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사실조사)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
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에 방문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

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구청장은 별표 1의 기
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우수 1단지,
우수 1단지, 장려 2단지, 고용상생 모
범 1단지를 선정한다.

제7조(결과통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
을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모범
공동주택 현판을 수여한다.

② 구청장은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
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비용 등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 모범공동주택: 500만원 범
위 내
2. 우수 모범공동주택: 300만원 범위 내
3. 장려 모범공동주택: 200만원 범위 내
4. 고용상생 모범공동주택: 1,000만원
범위 내
5.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사무소
가. 300세대 이하 단지: 100만원 범
위 내
나. 300세대 초과 단지: 300만원 범
위 내

③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는 제2항제
1호 내지 4호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

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상의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

금은 관리종사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관리종사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17.]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581호, 2022. 10. 17., 제정]

이 조례는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임신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을 축하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로 한다. 다만, 출산 후 전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축하금은 임산부 1인당 50만원 상당의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지원신청) ① 축하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임신 24주 이상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중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축하금 지원대상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축하금을 환수해야 한다.

통영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17.]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740호, 2022. 10. 17., 제정]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통영시 청소년의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자연생태지역”이란 산림, 해양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자연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국내·외의 생태지역을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생태교육 전문가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자연생태

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탐방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탐방활동 참가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탐방활동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탐방활동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림 및 해양 등 탐방활동 프로그램
2. 청소년 해외 탐방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탐방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참가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시장은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탐방활동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탐방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통영교육지원청, 시 관내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11.]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351호, 2022. 10. 11., 제정]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소재한 명물골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명물골목”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동종업종의 상가가 일정 거리에 집중되어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특정 거리로 인식하거나 일컬어지는 곳을 말한다.

제3조(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명물골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차별 추진 계획 등

② 구청장은 계획 수립시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명물골목 경제 활성화 위원회) ① 구청장은 명물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경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명물골목 상권 활성화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명물골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명물골목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 이 된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에서 추천하
는 의원
2. 상권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기
관·단체 및 학계 전문가
3.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
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
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
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
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
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
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
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
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
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명물골목의 명칭 표기) ① 명물골목의 명칭은 지역명, 업종명, 골목순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명을 붙이기가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특화된 거리는 골목 명칭 대신 특구 또는 거리 등으로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③ 외국어 명칭 표기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현재 지정·관리 중인 명물골목의 외국어 표기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1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명물골목의 홍보 또는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표지판의 표준 디자인은 별표 2와 같이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내표지판의 디자인은 골목별 특성에 따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내표지판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거나 표기된 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정비 등의 조치를

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명물골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골목상권의 경영실태 및 활력 정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골목상인회, 상가변영회 등의 관리 주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 건의사항 또는 활성화 제안사항
2. 골목 상권 변동실태 및 활력도 정도
3. 골목상인회 운영 실태 및 골목상인회 임원 변동 사항
4. 골목단위 주민 자체사업 추진 실태
5. 골목 및 안내표지판 관리 상태
6. 주변 환경 및 기타 참고사항

제13조(실태조사의 위탁) ① 명물골목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0조의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 및 해제) ① 위원회는 새롭게 부각되는 골목으로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골목상인회 등의 신청이 있으면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다음 명물골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 내 동종업종 상가의 밀집도 및 활력도
2. 상가번영회 등 관리주체 존재 여부

3. 시민 인지도

4. 건전한 미풍양속 부합 여부

②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골목의 활력도를 평가하고 제반 여건의 변동으로 기능을 상실한 골목에 대하여는 명물골목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물골목 지정 또는 해제는 명물골목 경제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조사의 적법성·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

[시행 2022. 10. 5.]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557호, 2022. 10. 5., 제정]

이 조례는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의령군의 지속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소멸위기”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이 우려되는 현상을 말한다.
3. “의령살리기 정책”이란 의령군의 지속발전과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4. “소생활권”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주민이 활동하는 소단위 일상생활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의령살리

기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2.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생활기반 확충
 3. 소생활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역량 창출
 4.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②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의령살리기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군수가 추진하는 의령살리기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령살리기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령살리기 정책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의령살리기 정책

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3.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4. 유�휴지 및 유�휴시설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의령살리기 정책 홍보 및 교육 사업
6. 민관 협치 및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령살리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의령살리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령살리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의결한다.

1. 의령살리기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생활권 활성화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의령살리기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

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전략담당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재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가. 군의회 의원

나. 의령살리기 정책 관련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대표

다. 그 밖에 군수가 의령살리기 정책 관련 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 대상이 되는 의령살리기 정책 관련 부서장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위기대응담당으로 한다.

제12조(자문) ① 군수는 의령살리기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4.]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562호, 2022. 10. 4., 제정]

이 조례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공주 알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발전시키고 미래 알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알밤을 말한다.
2. “알밤관련단체”란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계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알밤을 생산·유통·가공하는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알밤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알밤관련단체는 알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시의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알밤산업진흥계획)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알밤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알밤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알밤생산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내·국외 알밤 판로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알밤 소비 촉진 계획 및 행사에 관한 사항
5. 알밤 전문인력 양성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알밤산업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알밤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알밤 공동브랜드 및 상품개발
2. 알밤 명품화에 관한 사업
3. 알밤 관련 식품개발
4. 국내·국외 판로개척 지원 및 홍보사업
5. 알밤 유통구조 개선사업
6.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보급 및 교육 사업
7.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제공 확대를 위한 식품 연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알밤연구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알밤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신제품 개발 및 재배기술 연구
2. 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생육환경 연구
3. 국내·국외 판로개척을 위한 밤 식품 연구개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연구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알밤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식품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알밤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알밤산업육성협의회)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알밤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알밤산업 육성과제 발굴
2. 알밤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알밤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협의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회원의 경우에는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산림공원과장이 된다.

③ 회원은 외부전문가, 알밤관련단체 및 관계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3. 1. 1.]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102호, 2022. 9. 30., 제정]

이 조례는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결혼장려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결혼장려금의 지급)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를 한 결혼자 남·녀에게 각 100만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최초 지급 : 50만원
2. 2회차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만원

제4조(지급대상)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 22.]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554호, 2022. 9. 22., 제정]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영업장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할 것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 이

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

[시행 2022. 9. 23.]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622호, 2022. 9. 23., 제정]

이 조례는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분할 측량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용지”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 제방, 하천 등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지역·지구 등을 말한다.
2. “사유지”란 개인·법인·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3. “필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분할측량”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제3조(분할측량비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대상)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제방·하천 등에 필지가 일부 편입된 경우
2. 각종 인허가 시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지역·지구에서 필지가 일부 저촉되어 건축부지 등 제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지적측량수수료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로 한다.

② 지원액은 분할측량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체로 연간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토지이동(분할)정리가 완료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적측량수수료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각종 인허가 사업부지에서 용도지역·지구가 제척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서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금은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환수 및 반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지급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성평등 교육에 관한 의정토론회



때 · 곳

2022. 9. 30.(금) 14:00~16:00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참 석

130여명(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보건교사, 학부모 등)

주 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성평등 교육 방안 마련

- 최근 가해·피해 연령은 낮아지고, 그 피해는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예방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 성평등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의정토론회임
 -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아동·청소년 피해 증가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청소년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보편적 실시와 함께 교사·양육자를 포함한 성인 조력자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적권리 및 디지털 성범죄 교육 필요성에 공감함
 - 또한, 대응정책에서 성별·학교급별 접근이 필요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평등 교육 시수를 확보하여 맞춤형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언론은 심층 분석 보도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피해 예방에 앞장서야 하는 책무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 장소인 온라인 공간을 건전한 성교육 놀이문화가 정착된 놀이터로 조성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건립이 요구됨
-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①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정책과제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은 광범위한 소통과 정보의 이용을 가져온 반면에 디지털 성범죄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보편화’라는 결과로 이어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암묵적으로 용인해온 문화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 되었고, 이는 아동·청소년 피해 증가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청소년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
- 보호해야 할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이 아니라, 다양한 성적 실천을 시도하고 담론을 형성하며 성평등의 가치를 질문하고 있는 십대들의 성적 권리를 향한 목소리여야 할 것임
-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은 범죄 발생과 매개의 장소이기 이전에 해당 공간에서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믿어지는’ 한 다른 사람들과 관심사를 나누고 정보를 탐색하는 놀이와 정보추구의 장,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친밀성)의 장소임
- 아동·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와 결합하는 방식은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온라인상 성적놀이가 성착취 대상을 물색하는 잠재적 가해 집단에 의해 위태로워지는 형태
 - 온라인상의 성적 정보접근성 확대가 남성 아동·청소년의 왜곡된 남성성 실천에 영향을 미치면서 남성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형태

- 온라인에 국한되지 않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성을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학습하고 실행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놀이처럼 시행하는 집단적 폭력의 형태
-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지원기관 종사자들이 피해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부모(양육자)와 교사가 디지털성범죄 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정책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 대상 ‘나와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켜가는 디지털 권리와 책임 교육’을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교과과정에 삽입하여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보편적 실시를 제안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만이 아니라 교사·양육자를 포함한 성인 조력자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적권리 및 디지털 성범죄 교육이 필요
 -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정책에서 성별·학교급별 접근이 필요.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평등 교육시수를 확보하여 상급학교에서의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성평등이라는 공동의 책무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2 **지정토론 (3인)**

① 심순희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 학교 성·성평등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정책 방향

-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교육부.2021.)에 따르면 피해 종류는 언어적 성희롱이 784건으로 가장 높았고, 시각적 성희롱이 327건으로 2위였으며, 그다음은 성추행 279건, 불법 촬영 등이 61건, 성폭력 6건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은 여학생 피해가, 불법촬영 등 도구적 성희롱과 성추행은 남학생이 피해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남학생의 성추행 경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이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행위가 친구들과의 놀이 문화처럼 인식됐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함

○ 충남 학교 성·성평등 교육 및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방향

1) 성·성평등 교육 및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로 건강한 성가치관 함양

- 인권과 민주시민 교육에 바탕을 둔 건강한 가치관 함양을 목적
- 발달단계 및 교육 수요자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성·성평등 교육
- 학교와 전문기관 간의 역할 및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사회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성평등, 성인권 교육과 체험형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 역량강화 연수와 정책연구 등을 협력

2) 대상자별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제고

- 학교 구성원 대상 성폭력,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연간 각 1시간씩 의무로 실시, 이와 더불어 2022년부터는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특별 연수를 추가로 실시 등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지원
- 실효성 있는 학생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학생참여 중심 자율활동 강화로 교육과정 연계 성희롱·디지털·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학교 축제 연계 건전한 성문화 축제,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래와 동영상 제작·보급 등)
- 학부모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학교별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 교육자료, 홍보자료 등을 개발하였고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임

3) 교사 역량강화를 통한 학교 현장 지원 확대

- 담당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담당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 등 실시
- 교사들의 자율적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인 ‘성·성평등 교육 연구회’를 운영하여 교사들의 연구문화를 확산

4) 모두가 신뢰하는 성폭력 근절 대책 강화

- 도교육청은 <진단 → 예방 → 사안처리 → 상담 및 치유> One-Stop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인지교육지원센터를 구축

5) 학교 내 성 평등한 문화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방교육 체계 구축

② 이유정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를 넘어 청소년 성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성교육 강화

- 성별에 따라 “잠재적 가해자” 이거나 “잠재적 피해자”가 강화되는 것이 성교육의 효과라면, 우리는 남자 청소년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염려하기 전에 교육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청소년에게 성폭력이 왜 위계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설명하려면 자신의 몸과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과 성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구조적 성차를 인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 성폭력 예방교육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백을 하거나 받을 때’ ‘스킨십을 조율할 때’ ‘안전한 성관계를 고려할 때’ 등 성적 존재인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사례를 들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체험형 성교육을 지향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을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건, 성에 대한 청소년의 질문은 거의 대부분 ‘성적 욕망’과 ‘실천’ ‘몸’과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임
- 성평등 교육의 목표는 성적 차이와 다양성이 차별의 요인이 되는 사회구조를 탐색하고,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찾는 데 있음. 청소년의 가장 주요한 성적 질문에서 ‘정상적’, ‘규범적’ 지식과

태도를 찾아내고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함

- 청소년들이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고 확산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성적 권리를 보장받는 경험을 줘야 함
- 성교육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규범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사회의 성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과 방법이 구성되어야 함. 그 첫 단추는 청소년의 욕구와 호기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
- 충남지역 성평등 교육 정책 제안

첫째. 청소년 성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사회 성교육 전문기관,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초등 5학년과 중등 1학년 대상 4-5회기 집중학년제 실시

둘째. 문제화가 아닌 취약성에 근거한 중등 대상 남자 청소년 맞춤형 성교육 매뉴얼 개발 및 시범학교 운영

셋째. 충남 청소년 성문화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 진행

넷째.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및 관련 연구모임 확대

③ 류재민 (디트뉴스24 정치행정부장)

◎ 디지털 성폭력에 대처하는 언론의 자세

- 성폭력 사건을 전하는 언론의 태도는 신중해야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기사 제목부터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음. 잘못된 보도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이자 인권침해 요소가 됨
- 독자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범죄를 통해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고, 그 처벌은 합당했는지,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으로 진화하는 성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관련법에 허점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채울지 등 통찰력 있는 기사를 원함. 그것이야말로 언론이 주창하는 ‘독자의 알권리’ 임

- 언론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대중적 논의의 공론화를 이루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하고, 성범죄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보도가 필요함
-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는 2014년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만들었고 그간 3번의 개정을 함. 이 수첩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취재 보도시 유의점 ▲성희롱·성폭력, 알아야 할 표현과 상식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점검표 등을 담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를 심층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 언론의 관심과 여론 형성이 알권리 충족과 동시에 범죄 재발 및 피해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지역 언론에 부여한 책무이기 때문

③ 종합토론(질의답변)

〈질문〉

성인지 감수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함. 성인지 감수성을 가르치는 과목을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윤오용 천안YWCA 이사】

〈답변〉

학교 성교육은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을 연간 각 학년 14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음.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성교육 내용 구성을 국가 표준안을 바탕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보편적, 일반적 포괄적 기준을 준거로 재구성을 실시하고 있음. 필수 교과목 편성을 위해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음

【심순희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질문〉

성교육을 도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은 보건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성교육과 보건교육 담당 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박미정 아산둔포초 교사】

〈답변〉

타 시도 교육청 사례를 살펴보고, 도 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간 담당 부서 일원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에 있음

【심순희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질문〉

성범죄 예방 온라인 콘텐츠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제작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봄

【임정규 당진시 여성친화도시TF팀장】

일선 담당 교사들에 대한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이 필요함

【노지연 청소년상담사】

〈답변〉

현재 실효성 있는 학생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학생참여 중심 자율활동 강화로 교육과정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성인권·성평등 관련 자체적인 캠페인·토론회 등을 기획·실시하여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여 학교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음. 또한,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과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담당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담당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하여 성교육, 성평등 교육 전문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음

【심순희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토론회 과제 및 결론

〈과 제〉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정책으로 ①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보편적 실시 ② 성인 조력자 대상 교육 강화 ③ 성별·학교급을 고려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마련 필요
2.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건립이 필요

〈결 론〉

1. 청소년의 주요 활동 장소인 온라인 공간을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곳이 아닌 건전한 성교육 놀이문화가 안착된 놀이터로 조성 필요
2. 건전한 놀이문화로서 성·성평등 교육을 위해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성교육 매뉴얼 개발 보급이 필요
3. 언론은 디지털 성범죄를 다룰 때 심층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피해 예방에도 앞장서야 하는 책무가 있음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협력
과), 충청남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등

충청남도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때 · 곳

2022. 9. 30.(화) 14:00~16:30 / 충청남도의회 회의실(303호)

참 석

70명(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도민 등)

주 제

충청남도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모색

- ❖ 금번 토론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도민 등 70여 명이 참여하여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 주민자치회는 2013년 이후 읍·면·동 단위로 시범실시 운영되고 있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주민자치회를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인식하고 있고 명확한 권한이 없어 자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의정토론회를 계기로 입법 활동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이행 등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아쉬운점 또는 보완사항〉

-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시군 주민자치 업무 지원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추후에는 관련 공무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겠음.

① 주제발표(1인)

① 전상직(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 주민자치에 대한 본질과 원리

- 주민자치를 주민자치회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자치의 주체인 ‘자치회’로서 성립될 수 있도록 대표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역과 주민들이 연대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공동체를 행정에 맡기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발성, 민주적 의사결정권, 효율적 사무집행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자주성,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결정·실천하는 자율성이 필요함.

○ 주민자치의 과거, 현재, 미래

- 일제강점기 시기에 ‘면’에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설치하고 하부 구조로 행정의 통제를 받는 ‘리’를 설치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일본의 행정 계층을 그대로 유지함.
-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범실시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나타남. 첫째, 주민자치회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법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둘째, 주민자치회 구성이 획일적이며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고 사업 범위가 불분명하며, 주민의 대표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 미래 조건으로 분권력과 자치력이 구비되어야 하며, 한국적 현실에서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공간은 통리계층에서 가능할 것이고, 읍면동은 협치의 공간, 시군구는 자치단체

- 에서 커뮤니티 정책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함.
- 또한, 주민자치회의 성공 요건으로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주민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관치가 아닌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② 지정토론(7인)

① 최광희(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며 무차별 강요되는 사전의무교육, 주민자치위원 선정 추점제, 주민자치회 예산 및 인적 자원 부족 등이 주민자치회를 유명무실하게 함.
-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갖는 동시에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과 상호협력 관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행정기관은 충분히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주도적으로 행정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함.

② 김찬동(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은 리자치 혹은 마을자치에 입각한 마을연합자치이며, 주민자치는 공유재산이 있을 때 주민이 권리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유효하게 참여할 것임.
- 주민자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공유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면, 행정에 참여하는 객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생활자치의 주권자로서 주체가 되기 위한 공유재산 혹은 회비에 입각한 주민자치로 설계되어야 함.

-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리단위의 주민자치가 공유재산 혹은 공유공간에 대한 자치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과 중앙 정부에 주민자치정책의 근본적 개혁을 하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한 정책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

③ 이동호(법무법인 온다 변호사)

- 행정안전부 시범조례에 의한 주민자치 왜곡이 시정되지 못한 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주민자치중앙회 차원에서 4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음.
- 헌법소원 대상은 특정 지자체 조례이지만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과 배치되는 전국의 모든 조례들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전국적일 수 있으며 올바른 입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분권법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였음에도 정작 주민을 배제하고 소수의 위원으로 대체한 행안부 시범조례를 답습한 현행 조례들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주민의 자치권은 현행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음.
- 이에 주민자치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개헌을 기다리면서도 현행 헌법하에서 국회 차원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려면 결국 헌법소원 심판청구 인용이 절실할 것임.
- 이를 위해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 전달이 필요함. 헌법소원 결정이나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릴 것 없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시범조례 답습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시범조례를 새롭게 마련해 이를 통해 국회에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상향식 운동 전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④ 이일건(충청남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 그동안의 주민자치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계획을 만들어 지시함에 따라 주민자치가 무력화되고 있음.
- 올바른 주민자치가 되려면 충남형 주민자치 조례를 통해 주민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하며, 행정기관은 주민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⑤ 이병도(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 회장)

- 주민자치는 지역에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주민이 주인이고 주체이지만 현재의 주민자치는 모든 권한이 행정기관에 있음.
- 관치에서 벗어나려면 예산을 스스로 세우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예산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그 중 인건비 운용을 원활하게 해야 할 것임.

⑥ 김봉환(천안시 쌍용2동 주민자치회 회장)

- 충남은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논산은 15개 읍·면·동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으며, 공주시와 천안시 또한 2021년 기점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함.
- 주민자치 현장에 참여해 보지 못한 행정기관의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비전공교수들에 의해 충남형 주민자치의 로드맵이 설정되고 주민자치회의 교육자로 활동한다면 과연 충남형 주민자치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인력풀은 마련되었는지, 충남형 주민자치만을 위한 기준 매뉴얼은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선결과제들을 점검하고 실시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충남의 주민자치가 실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음.

⑦ 유호열(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과장)

- 충남은 15개 시군에 주민자치회 조례 및 관련 제도기반을 구축하였고, 106개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담당자 전문직위 운영 지원 등의 성과가 있음.
- 그러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군별 진행되는 주민자치아카데미, 주민자치 시범사업, 상설주민 자치학교 등 관련 사업간 연계한 운영계획이 부재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한계점이 있음.
- 따라서 주민자치사업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주민세 개인 균등분 상당액을 활용하고, 읍면동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할 것임.
- 또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확대를 통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도·시군 주민자치 업무 지원 공무원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통해 상호 연계협력 시너지 제고에 노력을 할 것임.

3 종합토론(질의답변)

<질문>

토론회를 앞서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과장님의 토론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충청남도 주민자치회에 먼저 발표하고 신청 토론해서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함. 주민자치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 공유되지 않은 내용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답변>

앞으로 주민자치회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정책을 추진할 때 현장의 의견을 듣고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음.

【유호열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과장】

<질문>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변경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시범실시 후 충청남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함.

【이일건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답변>

주민자치 시범실시 후 어떠한 성과가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충남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음.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나가겠음.

【유호열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과장】

〈질문〉

충청남도 주민자치에 대한 성과라고 명시된 부분은 데이터의 성과지, 주민자치 현장의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함. 예로 사무국장 운영비 성과라고 명시된 사항은 현장에서는 실감하기 어렵고, 동네 주민자치라는 개념과 충남형 주민자치라는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에서 바라보는 것과 실무에서 바라보는 것이 차이가 있음. 또한, 주민자치에 대한 연구를 연구기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대표 회장님들과 현장에서 소리를 통해 연구 결과물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임.

【김봉환 천안시 쌍용2동 주민자치회 회장】

〈답변〉

연구용역을 할 때는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할 것을 고려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음. 연구 방법이 미흡한 부분은 계속 현장과 소통해 효율적인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나가겠음.

【유호열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과장】

4 청중토론(질의답변)

〈질문〉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는 도지사님 의지가 중요함.

【이재호 청양 주민자치회 회장】

〈질문〉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컨설팅하는데 재원이 없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민의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주민자치회 설치 시 사무국장의 인건비·운영비가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상덕 금산 주민자치회 회장】

〈질문〉

주민자치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토론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집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가 처해 있는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건의와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인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논산 등에서 추진 중인데 자격요건을 갖춘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질의함.

【신권택 충청남도 주민자치연합회 부회장】

〈답변〉

읍면동장 주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에 불가능함.

【이현숙 충청남도의회 의원】

〈답변〉

주민자치는 정치와 운동이 아니기에 집회를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답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5 마무리 말씀

- 주민자치회 확대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실행과 실질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음.
- 향후, 입법 활동과 더불어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 마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이행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안착되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다양성, 민주성,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현숙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과제 및 결론

〈과 제〉

- 주민자치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활동과 제도적 장치 마련
- 자율성을 기반으로 행정기관과 수평적 관계 형성
- 주민자치회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과 상호협력 관계 구축
-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 및 참여 독려
-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집행 및 재정적 지원 확대

〈결 과〉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당면한 문제점과 주민자치회의 한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갖는 동시에 주민자치회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또한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고 다양한 지역 조직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마련하며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마련도 필요할 것임.

IV 후속조치 (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출 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사랑 愛너지 연탄나눔행사 개최

시의원 자발적 모금 통한 연탄 5,000장, 겨울용 이불 10채 기부
서구 아미동 경로당 방문하여 겨울용 이불 10채 전달 어르신 격려

부산광역시의회는 10월 21일(금) 오후 3시 서구 아미동 일원에서 겨울철 연탄난방으로 생활하는 에너지배려세대를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이날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에 거주하는 에너지배려세대 6가정을 선정하여 시의원들과 부산시청년연합회 회원 등 총 60여명이 인간띠 릴레이 방식과 지게 등으로 직접 연탄을 나르는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아미동 소재 경로당도 방문하여 겨울용 이불 10채를 어르신들께 전달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재원 400여만원으로 구입한 연탄 5,000장은 (사)부산연탄은행 측에 전달하여 부산시 관내 저소득층 50여 세대에게 골고루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시의원들이 연탄을 직접 나르고 배달하면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민생의 현장에서 늘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광역시의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고 말했다.

지난 10월 12일 개원 100일을 맞은 부산시의회는 ‘배려와 존중의 의회, 소통과 원칙의 의회’ 원칙 아래, 민생경제 회생,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현안 총력 지원, 시의회 조직 혁신 등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베트남 호치민시의회 대표단, 인천시의회 방문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인천·호치민 시의회 교류협력 5주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 인천시의회(의장 허식)와 호치민시의회 자매우호협력도시 협정(2017년 7월) 5주년 등을 기념해 호치민시의회 방문단이 인천을 찾았다.

베트남 호치민시의회 응웬 티 레(Nbuyen Thi Le) 의장을 단장으로 한 총 18명의 대표단이 23일 인천시의회를 방문,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중단됐던 국제교류 재개와 함께 양 도시의 협력방안 및 상호교류 확대에 대해 대면으로 여러 의견들을 나눴다.

양 도시 의회 간 상호친선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날 자리에서 허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양 도시의 동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방안을 찾고, 상호 우호를 증진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도시 의회의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한 소통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발전뿐 아니라 나아가 아시아의 상생과 번영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호치민시의회 응웬 티 레 의장은 “호치민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의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 행정혁신 정책 등을 배우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편, 호치민시의회 경제상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호치민시의 3위 투자국이며, 호치민시 및 인근지역에 2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활동 중이다.

또 호치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를 경제발전에 중요한 성장회복 시기로 보고 서비스 개선,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한국 도시들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개원식 개최

의원 선서문 낭독을 통해 힘찬 의정활동 결의 다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10월 14일(금), 조선대학교 ·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대학생 모의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개원식에는 대학생 모의의회 의원 23명과 정무창 의장, 이명노 시의원,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모의의회 정동환 의장은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의의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라고 힘찬 포부를 밝히며 엄숙히 선서했다.

이어서 정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정치는 청년들에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영역이지만 그들의 삶을 위해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민주화의 성지라 불리는 도시 광주에서 개원하게 된 이번 모의의회가 그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정무창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모의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며 본인들의 정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를 바란다”며 “대학생과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작년 9월에 조선대학교와 대학생 모의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모의의회 참가 대상을 전남대학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11월 중에 본회의장에서 대학생 모의의회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개원 66주년을 맞아 의회의 역할과 성과, 나아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회사(議會史)’ 편찬에 본격 착수한다.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18일 의장 접견실에서 ‘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김동희(더민주, 부천6)·이자형(더민주, 비례)·정하용(국민의힘, 용인5)·최병선(국민의힘, 의정부3) 의원과 이계삼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외부전문가 등 총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제정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의회사 편찬에 관한 계획수립 및 편집방향에 관한 사항 ▲의회사 사료조사, 수집, 연구 및 편찬 ▲의회사 의정 각 분야 자료수집, 정리 및 보존 ▲그 외 의회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의회는 이날 위원 위촉에 따라 11월 중 의회사 편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의회사 편찬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방향, 규모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염종현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로 들어선 중차대한 시기에 경기도 의회가 역사를 되짚으며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의회사 편찬사업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사 편찬위원회는 이날 위촉식 직후 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김현삼 위원(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초빙교수)을, 부위원장으로 이지훈 위원(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 연구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의회사 편찬위원의 위촉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울산광역시의회

울산시의회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소셜미디어 통합 브랜드(BI) '의회인 울산' 제작
시민 참여 '소셜미디어 홍보단' 운영
생생한 의정활동 유튜브 영상 '신입터뷰' 촬영 등

제8대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시민중심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 의회'를 표방하며 무엇보다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에서 운영중인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채널·유튜브로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지, 도움이 되는지, 원하는 정보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생생한 의정정보를 전달하는 소셜미디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홍보단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블로그를 신설하는 등 활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마련하였다.

블로그는 기존에 제공하는 카드뉴스에 더해 '소셜미디어 홍보단'이 작성하는 의회소식, 의정활동,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주제로 하는 포스팅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에는 의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소개하는 ‘울의원의 의회지식’ 애니메이션 영상, 제8대 상임위원회 향후 활동 포부를 밝히는 ‘신입터뷰’ 영상 등을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경직된 의회 이미지 탈피를 하였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에는 5분자유발언, 임시회·정례회 의사보고,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 소식뿐 아니라 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소식, 울산 축제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친근한 의회 이미지 정립과 체계적인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소셜미디어 통합 브랜드(BI) ‘의회인 울산’을 제작하였다.

김기환 의장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잘해도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기존의 TV, 신문 등 언론은 물론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가까이에서 시민과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제·개정 법령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시행 2022. 9. 27.] [대통령령 제32920호, 2022. 9. 27., 제정]

1

제정이유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제3조)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나.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 및 하부조직(제4조 및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도록 함.

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9조 및 별표 1)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교육부에서 이체되는 공무원의 정원 21명(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8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9급 2명)을 포함한 31명(정무직 3명, 교육공무원 11명,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이하 16명)으로 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0. 1.] [대통령령 제32912호, 2022. 9. 20., 제정]

1 제정이유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35호, 2021. 11. 30. 공포, 2022. 10. 1.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면적 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적용방식,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사항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급제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8조 및 별표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중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나. 면적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적용방식(제10조, 제11조, 제21조 및 제22조)

-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중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만제곱미터 이하,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6만제곱미터 초과 10만제곱미터 이하,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 20만제곱미터 초과 30만제곱미터 이하의 세가지 기준면적 구간을,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0만제곱미터 이하,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 20만제곱미터 초과 30만제곱미터 이하의 세가지 기준면적 구간을 각각 설정함.
- 2) 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 모두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임업인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로 정함.

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사후관리(제29조)

- 1) 산림청장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으로 구성되는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2)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 기준(제30조 및 별표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 기준을 정함.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9. 25.] [대통령령 제32911호, 2022. 9. 20., 제정]

1 제정이유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중단·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66호, 2021. 9. 24. 공포, 2022. 9. 25.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 신고 사실의 조사 절차·방법 및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정도에 관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제14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 대상 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영하는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사실의 조사 절차·방법(제16조)

-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조사절차 전반에 관하여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신고 사실을 조사하도록 함.
- 2) 예술인보호관*이 신고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일시와 장소 및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 예술인보호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다.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정도에 관한 기준(제18조 및 별표 2)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3년간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정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및 별표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희롱·성폭력 등의 신고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항의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보은군에 거주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 등 관련

질의요지

보은군수가 보은군에 거주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가 관할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260, 2022. 10. 5., 충청북도 보은군]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식품위생법」 제40조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제1항),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는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하 “건강진단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강진단규칙 제3조에서는 건강진단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라 한다)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거나(제1항),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제2항)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법령에서 별도의 감면규정과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근거해

조례로 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자치사무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는 할 것이나,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로서 건강진단규칙과 같이 개별법령에서 그 수수료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수료나 사용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그것은 납부의 예외가 되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바 수수료 납부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진단규칙에서 수수료에 감면에 관해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 군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라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목적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질의요지

친환경 농산물 구매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의견22-0251, 2022. 10. 5., 충청북도 옥천군]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친환경 농산물 구매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면, 친환경 농산물 구매사무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지방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구매사업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구매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살펴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3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먹거리의 유통과 지역내 우선공급 및 생산에 관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나목에서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의 1)에서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 지도”를 시·군·자치구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환경 농산물 구매사무는 옥천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특정 자치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곤란한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집행의 실정,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의 필요성,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자치사무를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공익상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구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지 여부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사업에 관한 일반회계·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중복 여부, 원활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위해 구매 기금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 등 옥천군의 사정을 고려하여 귀 군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질의요지

가.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나. 교육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
방자치단체 소재의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255, 2022. 10. 5., 인천광역시]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무의 집

행기관을 교육감으로 규정하려면 그 사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구체적으로 어떤 사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지방자치법」이나 교육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어떤 사무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볼 것인지는 사무의 성격,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제5호)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데, 체육복 구입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인 부담이 학교교육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육복 구입비 지원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법 제20조에서는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제8호),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제9호) 및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제17호)를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도 시·도 교육감은 교육복지의 증진(제2호)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학생에 대한 체육복 구입비의 지원은 자치사무 중에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및 지원 대상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지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지원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제5조),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7조),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고(제13조제1항), 대안교육기관이 시설·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

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등(제20조) 교육감에게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운영,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지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과 다르게 보아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의요지와 같은 재정지원과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우선 같은 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대안교육기관법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원지원을 할 수 있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교육자치법 제20조를 근거 규정으로 들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관할구역 내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복 구입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원 사업의 내용, 지원 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인천광역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인

천광역시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조례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적 관할과 인적 관할의 범위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타 지방자치단체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은 주민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방자치단체 소재의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의요지와 같은 재정지원과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제5호 및 교육자치법 제20조를 근거 규정으로 들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귀 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조례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에 거창군수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 거창군수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267, 2022. 10. 20., 경상남도 거창군]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요금을 징수하는 사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법」 제55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르면 소규모급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시설로서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일의적으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도법」 제55조제3항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법」 제55조에서는 시장·군수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항),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제5항) 등 시장·군수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사항이 주로 수질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 거창군수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표지 설명

충남도의회, 역량강화소통 위한 ‘12대 의회 의정워크숍’

- 이틀간 보령시 일원서 특강 등 진행… 의정방향 논의·정보교류의 장 마련 -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의정환경에 대응하고, 의원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보령시 일원에서 향후 의정방향 논의 및 의원 간 교류를 위한 ‘제12대 의회 의정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원 46명이 ‘함께 만드는 청렴韓 세상,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청렴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청렴도 전국 1위’ 재탈환을 다짐하기도 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논어에서 배우는 역경 극복의 지혜)과 강지원 변호사(지도자의 사랑과 정의, 반부패 청렴), 정진수 감성컴퍼니 대표(디지털&SNS 마케팅 트렌드와 전략)의 강연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조석준 기후변화저널 대표가 ‘천지개벽의 시대, 자기계발과 공적(公的) 역할’을 주제로, 신상훈 (주)톡킹스피치 대표가 ‘통통통 리더십(고통없이 화통하게 소통하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조 의장은 “제12대 의회는 정파를 떠나 의원 간 화합을 통해 발전하는 충남도의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번 워크숍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22. 10. 5. 보도자료-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월: 2022년 10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